2015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5차 민족문화재분과 회의록

■ 일 시:2015. 7. 7.(화) 14:00

■ 장 소:문화재청 대회의실

■ 출석위원: 백영흠(위원장), 석대권, 정명섭, 홍형순,

남해경, 김왕직(이상 6명)

■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문화재위원회

	목 차			
【검토사항】				
1	영주 괴헌고택 이전 배치계획 변경	1		

검 토 사 항

안건번호 민속 2015-05-01

1. 영주 괴헌고택 이전 배치계획 변경

가. 제안사항

영주 다목적댐 건설로 이전되는 중요민속문화재 제262호「영주 괴헌고택」 배치 계획(전통문화체험단지)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○ 영주 괴헌고택 이전 배치계획(전통문화체험단지)은 2013년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3차회의 시 검토하여 허가되었으나, 단지 면적을 확장하고 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 청 인 : 영주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중요민속문화재 제262호「영주 괴헌고택」
 - ㅇ 소 재 지 :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
 - ㅇ 이건예정지 :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3번지 일원
- (3) 신청내용 : 영주 괴헌고택 이전지 배치계획 변경
 - ㅇ 당초계획
 - 단지면적 : 51,042 m²
 - 이전 대상 문화재 : 21점[지정문화재 10점(국가지정 1점), 비지정문화재 11점]
 - ㅇ 변경계획
 - 단지면적 : 60,320m²(당초 대비 9,278m² 증가)
 - 이전 대상 문화재: 17점[지정문화재 12점(국가지정 1점), 비지정문화재 5점]
 - 전통문화체험관, 주차장, 화장실, 휴게소 등 추가
 - ㅇ 변경사유
 - 전통문화체험관, 주차장, 화장실, 휴게소 등 설치 위해 단지면적 추가 확보
 - 지정문화재 2점(심원정, 성황당)을 단지 내로 이전하고, 비지정문화재 6점은 단지 내 이전에서 제외

라. 자문 의견(문화재위원 ㅇㅇㅇ, ㅇㅇㅇ, ㅇㅇㅇ, 지방문화재위원 ㅇㅇㅇ)

-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(2015.5.14.)
 - 이전 단지의 콘타를 제작하여 경사에 맞게 재배치 함
 - 좌측의 장씨주택 3동은 마을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배치함
 - 괴헌고택과 덕산고택은 레벨 등을 고려하여 원형과 같이 배치함
- 문화재위원 ○○○(2015.5.15.)
 - 단지의 공간구성은 전통마을의 풍광을 이루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
 - 괴헌과 덕산고택은 남서쪽(단지 좌측)에 문화재 지정 당시의 배치형태와 동일하게 배치 함
 - 장씨고택과 나머지 주택(까치구멍 포함)은 동남쪽(단지 우측)에 전망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자리잡도록 함
 - -도로에서 대문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원래대로 마을길에서 대문채로 진입 하도록 함
 - 향후 건축물이 확장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두도록 함
-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(2015.5.16.)
 - 마을 배치는 기본적으로 전통마을의 구성에 맞게 하여야 함
 - 마을 입구는 당산나무를 비롯한 마을 차폐공간을 적절하게 만들고, 이주 단지의 집은 괴헌고택과 덕산고택을 원래 있는 모습으로 이전 · 복원 하 는 것이 바람직 함
 - 마을의 전체구성은 괴헌고택과 덕산고택을 전통마을에서 중심고택으로 보고,이를 중심으로 집들을 배치하는 것이 전통적인 맛이 날 것으로 보임
 - 지정문화재 이외에도 민가들이 중간중간 배치하고, 마을 골목길을 그대로 표현하여 주어야 할 것임. 이 외에 마을의 개울, 빨래터, 공동 놀이터 등을 만들어 체험공간으로 활용함
- 경북 지방문화재위원 ○○○(2015.5.14.)
 - 배면도로에 따라 배산 개념으로 배치함
 - 괴헌고택과 덕산고택 외 장씨문중 건물은 가급적 일곽으로 모으도록 함
 - 배면 도로 경계 부분 마운딩 부분은 배면의 기존 산과 어울리도록 능선 높이를 굴곡있게 조절함
 - 복원 계획은 본 계획과 별도 추진토록 함

마. 참고사항

- 괴헌고택 소유자(○○○)가 전통문화체험단지 배치계획(안)에 대하여 영주시에 의견을 제시하였고(2015.6.4.), 영주시에서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음(2015.6.7.)
- ※ 이전 가옥의 세부 배치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실시설계 추진시 반영하여 추진할 것임을 회신(세부내용 붙임 참고)

바. 검토의견

○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배치계획 변경안이 마련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, 실시설계 추진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

사. 의결사항

- ㅇ 조건부가결
 - 실시설계 추진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

붙임: 1. 영주 괴헌고택 이전 관련 질의 및 회신자료 1부.

2. 영주 괴헌고택 이전 관련 소유자 의견서 1부.

[붙임1]

영주 괴헌고택 이전 관련 질의 및 회신자료

소유자 질의 사항(2015.6.4.)	영주시 회신(검토결과, 2015.6.7.)
《질의 1》 O 문화재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실측에 대한 배치도(안)을 공개하지 않은 사유는?	 이 기본계획 용역 범위에는 실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누차 설명하였고, 기존 자료를 다운받아 배치도를 작성하였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, 이 문화재소유자들에게 향후 실시설계시 실측을 통해 오차를 바로잡을 것을 3월 25일 회의석상에서 밝혔음
《질의 2》 O 문화재위원회 부결 내용중 고택 대지면적 과다에 대한 부분에서 괴헌고택의 대지면적을 일방적 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고택은 대지면적을 조정하지 않은 사유는?	 아 배치도의 면적은 현재의 담장선을 기준으로 하였으나, 괴헌고택의 월은정 복원 요청건으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타 소유자들의 요구도 반영하여 가옥별 복원 배치도면을 작성하여 경북도청에 제출 하였음 아 복원계획은 현상변경허가 사항이므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현 상태대로 배치도면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음. 아 이에 따라 괴헌고택 뿐만 아니라 장씨고택, 의관댁, 만연헌, 김숙희 가옥 등도 방앗간채, 문간채, 화장실 등의 면적을 축소 조정하였음 아 월은정을 포함한 모든 가옥의 원형 복원계획은 향후 현상변경허가를 통하여 부지를 확보할 예정임.
《질의 3-1》 o 5월 8일 심의 신청하여 부결된 배치도(안)을 자문한 전문가는 누구이며, 어떤 사유로 특정 고택 의 면적을 축소하였는지?	o 5월 8일 심의 신청한 배치도(안)은 괴헌고택을 비롯한 문화재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하였음
《질의 3-2》 o 건축, 민속, 토목, 조경,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수렴 후 문화재소유자와 협의하여 배치도 를 정립하여 주기바람	o 실시설계 시 분야별 전문가와 문화재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누차 설명하였으며, 모든 문화재 소유자들이 공감한 사항임
《질의 4》 o 고택정면 좌측의 장독대 누락, 방 앗간채 본채 좌측면에 중복되게 평면으로 왜곡되게 표시하였음. 실측된 도면으로 정확하게 작성된 고택 평면을 작성하여 주기 바람	o 잘못 표시된 부분은 검토 후 수정하겠으며, 추후 실시 설계시 실측을 통하여 바로잡겠음.

《질의 5》

- o 전통문화체험단지는 토목공사 계획부분을 제외하고 사용 가 능한 실측된 가용면적으로 고택 규모 및 대지면적을 적용하여 배치도를 작성하여 주기 바람
- o 실시설계시 정밀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시하겠음

《질의 6》

- o 배치도와 관련 공문을 받은 것이 6월 2일 인데 6월 5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임. 소유자의 의견 수렴 기간을 최소 10일 이상 여유기간을 주시기 바람
- o 배치도는 문화유적대책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모든 소유자들이 인지한 상태이며, 공문 발송 전 소유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였음.
- o 괴헌고택은 찾아가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공문으로 통보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문으로 발송하였음

《질의 7》

- o 건의내용을 적용한 배치도(안)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기 바람
- o 상기 건의내용은 실시설계시 반영 예정이며, 기타 의견이 없으면 문화재청에 배치계획을 심의 신청 하겠음